

##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 의미와 북한인권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38

북한이 지난 달 30일 개막한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수영 50m 자유형에 출전하는 선수 1명과 임원 23명 등 모두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북한이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인권 측면에서 볼 때도 금년 4월 김정은 제1비서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의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인권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북한의 장애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북한에는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약 8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관련 통계 미발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상대적으로 좁은 ‘장애자’의 정의<sup>1)</sup> 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장애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는 북한 당국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있어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체로 장애인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선언

1)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15가지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6등급까지 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를 크게 육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Declaration on Disabled Persons)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천부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엔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제정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1998년 7월 비정부 단체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발족되었다. 이 단체는 2005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실태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가운데는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의 장애인들은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011년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하였다. 소아마비, 맹인, 병어리, 꼽추, 앓은뱅이, 난쟁이, 신체 일부 상실자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부정적이라고 한다.<sup>2)</sup> 이런 점에서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의 장애인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비록 수영 50m 자유형 예선에 출전한 선수(림주성)가 출전 선수 중 꼴찌를 기록하여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장애를 극복한 올림픽 참가는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반면 그 동안 북한이 보여준 이중적인 행태(외형상의 인권개선 조치-내부적인 인권침해 지속)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대외적으로 인권개선을 선전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노동보호법 등 일련의 인권법령을 제정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외형상의 인권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 교육 및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 오히려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고 북한 아동들 역시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건설 및 국토관리 현장에 내몰리면서 노동인권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장애인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장애인올림픽 참가를 통한 장애인의 인권 개선이 북한 당국의 진정한 의도인지, 아니면 장애인올림픽 참가를 수단으로 하여 김정은 체제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는 향후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런던 장애인올림픽 참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애인정책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 의도는 후자에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 당국이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였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2) 자세한 내용은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387~401 참조.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는 북한의 장애인,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첫째, 장애인올림픽 참가라는 상징적인 의미, 제한된 범위를 넘어 북한의 일반 장애인들과 일반 주민들도 인권 개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인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이행하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장애인보호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제정한 법령들을 장식적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및 준수가 필요하다. 2006년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들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sup>3)</sup>

둘째,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비정치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는 정치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국제스포츠행사의 남북단일팀 참가, 올림픽 공동입장 등 체육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남북교류를 한 바 있다. 장애인올림픽에서의 공동입장, 단일팀 참가도 모색해 볼 만하다. 나아가 문화, 예술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 확대는 좁게는 북한 주민 인권의 한 측면인 문화적 권리의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측면에서는 남북공동체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용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재활센터,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공장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국가차원의 장애인 대우 내지 장애인 지원은 전투나 군복무 중 다친 ‘영예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종합회복센터 건립, 특수학교 지원, 장애인 급식 지원, 장애인 체육·예술훈련 지원 등의 대북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체계적이다. 우리의 장점과 노하우를 살려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속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의 경우 지원된 물자가 북한의 체제유지 도구로 전용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식량, 경비 등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보다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3) 2012년 9월 5일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에는 119개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1일 비준하였다.

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은 북한주민들의 대남친화력 강화로 이어져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KINU 201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